화정1지구 아르엘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2-296-0056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11.1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1.13.(금)	2026.11.23.(월)	2026.11.24.(화)	2026.11.25.(수)	2026.12.01.(화)	2026.12.04.(금) ~ 12.12.(토)	2026.12.14.(월) ~ 12.17.(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wajeong-seohan.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O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1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5.11.1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11.23.(월)	2026.11.24.(화)	2026.11.25.(수)	2026.12.01.(화)	2026.12.04.(금) ~ 12.12.(토)	2026.12.14.(월) ~ 12.17.(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2-6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울산광역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액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발표일(2026.12.01.)로부터 6개월**	

※ 전매금지,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 – 43408호(2026.11.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2-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4층 8개동 총 802세대**
[특별공급 432세대(기관추천 66세대, 다자녀가구 124세대, 신혼부부 100세대, 노부모부양 28세대, 생애최초 48세대, 신생아 6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558	01	059.9860A	59A	59.9860	21.5857	81.5717	39.6613	121.2330	40.7553	70	7	11	11	3	5	7	44	26	3
	02	084.9980A	84A	84.9980	29.2229	114.2209	56.1987	170.4196	57.7488	487	49	74	74	15	35	49	296	191	21
	03	084.9906B	84B	84.9906	28.4935	113.4841	56.1939	169.6780	57.7438	48	5	8	8	2	4	5	32	16	2
	04	084.9990C	84C	84.9990	29.5090	114.5080	56.1993	170.7073	57.7495	45	5	7	7	2	4	5	30	15	2
	05	101.9938A	101A	101.9938	34.2309	136.2247	67.4360	203.6607	69.2960	144	-	22	-	5	-	-	27	117	6
	06	101.9560T	101T	101.9560	33.7816	135.7376	67.4110	203.1486	69.2703	8	-	2	-	1	-	-	3	5	-
	합 계									**802**	**66**	**124**	**100**	**28**	**48**	**66**	**432**	**370**	**34**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059.9860A	084.9980A	084.9906B	084.9990C	101.9938A	101.9560T
약식표기	59A	84A	84B	84C	101A	101T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단지별,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별 조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서 동·호수를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호수는 청약한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되오니 단지 및 동·호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변경 불가합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기타 공용면적은 상품성 개선 및 현장 여건 반영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내 일부 발코니 초과 면적이 포함되어 산정되었으며, 면적 산출근거 등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A	84A	84B	84C	101A	101T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8	1	1	-	-	**12**
	장기복무 제대군인		1	8	1	1	-	-	**1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8	1	1	-	-	**11**
	장애인	울산광역시	1	11	1	1	-	-	**14**
		부산광역시	-	2	-	-	-	-	**2**
		경상남도	-	1	-	-	-	-	**1**
	중소기업 근로자		2	11	1	1	-	-	**1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	74	8	7	22	2	**124**
신혼부부 특별공급			11	74	8	7	-	-	**10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15	2	2	5	1	**28**
생애최초 특별공급			5	35	4	4	-	-	**48**
신생아 특별공급			7	49	5	5	-	-	**66**
합 계			**44**	**296**	**32**	**30**	**27**	**3**	**43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동호 구분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무이자						잔금(30%)
								1차	2차	3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후 30일이내	계약후 180일이내	2027-07-14	2027-10-14	2028-03-14	2028-08-14	2029-01-15	2029-06-14	입주지정일
59A	107동 (1,5,6호)	1층	3	62,980,000	345,020,000	-	408,000,000	10,000,000	10,400,000	20,4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22,400,000
		2층	3	63,980,000	350,520,000	-	414,500,000	10,000,000	10,725,000	20,725,000	41,450,000	41,450,000	41,450,000	41,450,000	41,450,000	41,450,000	124,350,000
		3~4층	6	64,650,000	354,150,000	-	418,800,000	10,000,000	10,940,000	20,940,000	41,880,000	41,880,000	41,880,000	41,880,000	41,880,000	41,880,000	125,640,000
		5~6층	6	64,970,000	355,930,000	-	420,900,000	10,000,000	11,045,000	21,045,000	42,090,000	42,090,000	42,090,000	42,090,000	42,090,000	42,090,000	126,270,000
		7~9층	9	65,310,000	357,790,000	-	423,100,000	10,000,000	11,155,000	21,155,000	42,310,000	42,310,000	42,310,000	42,310,000	42,310,000	42,310,000	126,930,000
		10~14층	15	66,300,000	363,200,000	-	429,500,000	10,000,000	11,475,000	21,475,000	42,950,000	42,950,000	42,950,000	42,950,000	42,950,000	42,950,000	128,850,000
		15~19층	15	66,960,000	366,840,000	-	433,800,000	10,000,000	11,690,000	21,690,000	43,380,000	43,380,000	43,380,000	43,380,000	43,380,000	43,380,000	130,140,000
		20층이상	13	67,290,000	368,610,000	-	435,900,000	10,000,000	11,795,000	21,795,000	43,590,000	43,590,000	43,590,000	43,590,000	43,590,000	43,590,000	130,770,000
84A	101동 (1,2,5호) 102동 (1,2,3,6,7호) 103동 (1,2,3,5,6호) 104동 (1,2,3,6호) 105동 (3,6호) 107동 (2,3호)	1층	12	88,660,000	441,940,000	-	530,600,000	10,000,000	16,530,000	26,53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159,180,000
		2층	21	90,060,000	448,940,000	-	539,000,000	10,000,000	16,950,000	26,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61,700,000
		3~4층	42	90,980,000	453,520,000	-	544,500,000	10,000,000	17,225,000	27,225,000	54,450,000	54,450,000	54,450,000	54,450,000	54,450,000	54,450,000	163,350,000
		5~6층	42	91,450,000	455,850,000	-	547,300,000	10,000,000	17,365,000	27,365,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164,190,000
		7~9층	63	91,920,000	458,180,000	-	550,100,000	10,000,000	17,505,000	27,505,000	55,010,000	55,010,000	55,010,000	55,010,000	55,010,000	55,010,000	165,030,000
		10~14층	105	93,320,000	465,180,000	-	558,500,000	10,000,000	17,925,000	27,925,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167,550,000
		15~19층	105	94,250,000	469,850,000	-	564,100,000	10,000,000	18,205,000	28,205,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169,230,000
		20층이상	97	94,720,000	472,180,000	-	566,900,000	10,000,000	18,345,000	28,345,000	56,690,000	56,690,000	56,690,000	56,690,000	56,690,000	56,690,000	170,070,000

84B	104동 (5호) 105동 (5호)	1층	2	88,700,000	433,800,000	-	522,500,000	10,000,000	16,125,000	26,125,000	52,250,000	52,250,000	52,250,000	52,250,000	52,250,000	52,250,000	156,750,000	
		2층	2	90,110,000	440,690,000	-	530,800,000	10,000,000	16,540,000	26,54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159,240,000	
		3~4층	4	91,040,000	445,260,000	-	536,300,000	10,000,000	16,815,000	26,815,000	53,630,000	53,630,000	53,630,000	53,630,000	53,630,000	53,630,000	160,890,000	
		5~6층	4	91,500,000	447,500,000	-	539,000,000	10,000,000	16,950,000	26,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61,700,000	
		7~9층	6	91,970,000	449,830,000	-	541,800,000	10,000,000	17,090,000	27,090,000	54,180,000	54,180,000	54,180,000	54,180,000	54,180,000	54,180,000	162,540,000	
		10~14층	10	93,370,000	456,630,000	-	550,000,000	10,000,000	17,500,000	27,5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15~19층	10	94,300,000	461,200,000	-	555,500,000	10,000,000	17,775,000	27,775,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166,650,000	
		20층이상	10	94,770,000	463,530,000	-	558,300,000	10,000,000	17,915,000	27,915,000	55,830,000	55,830,000	55,830,000	55,830,000	55,830,000	55,830,000	167,490,000	
84C	101동 (3호) 102동 (5호)	1층	1	88,690,000	441,910,000	-	530,600,000	10,000,000	16,530,000	26,53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159,180,000	
		2층	2	90,090,000	448,910,000	-	539,000,000	10,000,000	16,950,000	26,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61,700,000	
		3~4층	4	91,010,000	453,490,000	-	544,500,000	10,000,000	17,225,000	27,225,000	54,450,000	54,450,000	54,450,000	54,450,000	54,450,000	54,450,000	163,350,000	
		5~6층	4	91,480,000	455,820,000	-	547,300,000	10,000,000	17,365,000	27,365,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164,190,000	
		7~9층	6	91,950,000	458,150,000	-	550,100,000	10,000,000	17,505,000	27,505,000	55,010,000	55,010,000	55,010,000	55,010,000	55,010,000	55,010,000	165,030,000	
		10~14층	10	93,350,000	465,150,000	-	558,500,000	10,000,000	17,925,000	27,925,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167,550,000	
		15~19층	10	94,290,000	469,810,000	-	564,100,000	10,000,000	18,205,000	28,205,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169,230,000	
		20층이상	8	94,760,000	472,140,000	-	566,900,000	10,000,000	18,345,000	28,345,000	56,690,000	56,690,000	56,690,000	56,690,000	56,690,000	56,690,000	170,070,000	
101A	105동 (1,2호) 106동 (1,2,3,5호)	1층	6	106,820,000	424,527,273	42,452,727	573,800,000	10,000,000	18,690,000	28,690,000	57,380,000	57,380,000	57,380,000	57,380,000	57,380,000	57,380,000	172,140,000	
		2층	6	108,520,000	431,254,545	43,125,455	582,900,000	10,000,000	19,145,000	29,145,000	58,290,000	58,290,000	58,290,000	58,290,000	58,290,000	58,290,000	174,870,000	
		3~4층	12	109,630,000	435,700,000	43,570,000	588,900,000	10,000,000	19,445,000	29,445,000	58,890,000	58,890,000	58,890,000	58,890,000	58,890,000	58,890,000	176,670,000	
		5~6층	12	110,190,000	437,918,182	43,791,818	591,900,000	10,000,000	19,595,000	29,595,000	59,190,000	59,190,000	59,190,000	59,190,000	59,190,000	59,190,000	177,570,000	
		7~9층	18	110,750,000	440,136,364	44,013,636	594,900,000	10,000,000	19,745,000	29,745,000	59,490,000	59,490,000	59,490,000	59,490,000	59,490,000	59,490,000	178,470,000	
		10~14층	30	112,450,000	446,863,636	44,686,364	604,000,000	10,000,000	20,200,000	30,2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181,200,000	
		15~19층	30	113,560,000	451,309,091	45,130,909	610,000,000	10,000,000	20,500,000	30,5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83,000,000	
		20층이상	30	114,140,000	453,600,000	45,360,000	613,100,000	10,000,000	20,655,000	30,655,000	61,310,000	61,310,000	61,310,000	61,310,000	61,310,000	61,310,000	183,930,000	
101T	108동 (1,2,3,5호)	1층	4	112,000,000	439,545,455	43,954,545	595,500,000	10,000,000	19,775,000	29,775,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178,650,000	
		2층	4	112,000,000	439,545,455	43,954,545	595,500,000	10,000,000	19,775,000	29,775,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178,650,000	

■ 공통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상가) 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전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단,계약체결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합계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음.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함.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 (연체료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td></tr>
</table>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울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12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10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table>
<tr><td></td><td>■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tr><th>순위</th><th>내용</th></tr>
<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td></tr>
<tr><td>비고</td><td>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td></tr>
</table>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1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8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r><td rowspan="3">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3">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able></td></tr>
</table>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4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table>
<tr><td></td><td>-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3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table>
<tr><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
<tr><td>2026.11.13.</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r>
</table></td></tr>
</table>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6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td></tr>
</table>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1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울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1항)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

	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구 분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
일 정	2026.11.23.(월)	2026.11.24.(화)	2026.11.25.(수)	2026.12.01.(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화정1지구 아르엘 견본주택 (10:00~14:00)** **(견본주택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2-6번지)**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td></tr>
</table>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2.01.(화) ~ 2026.12.10.(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2.0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로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중복청약(당첨 시) 처리기준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하며 또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으로서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 내에서 본인과 세대원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이 가능하며 둘 다 당첨될 경우 둘 다 계약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중복 당첨시 부부에 한해 선(先) 신청분만 유효, 후(後) 신청분 무효 처리. 단, 부부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둘 다 부적격 처리됨)
-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미적용)에 세대분리된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 또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계약이 가능합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예비 입주자)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확인

대상	제출 기간	제출장소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6.12.04.(금) ~ 2026.12.12.(토) (10:00 ~ 16:00)	화정1지구 아르엘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2-6번지)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은 견본주택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아래 구비서류 내용 중 대리인 서류 추가필요 합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구비서류 안내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 등으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 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 : '계약 및 사업신청'] [제출처 : '화정1지구 아르엘']**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본인과의 관계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등 혼인 관계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 ※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 될 수 있음)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본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서류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를 불가능한 자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기록 전체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기관추천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 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포함하여"상세"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 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이 미혼 자녀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성명,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확인각서(양식)견본주택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견본주택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제6호서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소득 확인 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등 혼인 관계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표1]-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1년이상 동일 등본 등재시)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 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비사업자확인 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비사업자확인 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을 확인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자산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표3]-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없이 제출하여야 함.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견본주택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표1]-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표2]-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등 혼인 관계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1년이상 동일 등본 등재시)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의 동일 등본상 등재된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비사업자확인 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비사업자확인 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을 확인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자산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표3]-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을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 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기간,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 등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공급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 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 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간, 진료개시일, 요양기관 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 등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견본주택에 비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신생아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등 혼인 관계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표1]-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 비속	• 혼인중이 아닌 경우 대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1년이상 동일 등본 등재시)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비사업자확인 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비사업자확인 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을 확인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자산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표3]-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견본주택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가점제 예비 입주자)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 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간,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 등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 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간,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 등 포함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되어야 인정),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본인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 : '기타(직접 작성하세요)'란 클릭후 '서류제출 및 계약 위임용' 직접입력 작성] [제출처 : '화정1지구 아르엘']**
	○		신분증 및 도장 (※모바일신분증불가)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대외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 직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 중 직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및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구분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휴직유형 명시 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원본 :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근로계약서(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③ 해당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원본 : 직인날인)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② 재직증명서(원본 : 직인날인)	① 세무서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② 세무서
	신규 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입주자공고일 이전 (국민연금 미가입자)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①국민연금공단 /세무서 ②,③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해당직장 ②,③ 해당직장/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급여명세표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또는 위촉증명서	①,② 세무서/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 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무직자		①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②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 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세무서 ② 견본주택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서류 제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및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 일 경우) ② 종합소득세 납부자가 아닌자(학원강사,보험모집원,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① 세무서 ②,③,④ 해당직장/세무서

		③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④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구분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위택스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클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에서 '과세 사실이 없을을 증명')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위택스 / 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임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대상	계약체결 기간	장소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2026년 12월 14일(월) ~ 12월 17일(목) 10:00~16:00	화정1지구 아르엘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2-6번지)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 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임.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일반공급, 특별공급)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당첨유형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화정1지구 아르엘'을 필수 입력 후 발급 분에 한해 인정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본인	• 사본 제출 (원본은 수분양자가 보관하는 공급계약서와 같이 보관) • 수입인지 세액 : 1억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사업주체와 균등 부담)
	○		통장사본	본인	• 인지세 사업주체 부담분 환불용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당첨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인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도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여부, 세대원관계 확인,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하며,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_방문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구매금액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세액(균등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나,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처리 되고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분양금액의 연체, 계약 부정행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일반공급으로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 되지 않음.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됨
- 본 아파트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신고 시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464401-04-162691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상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착오납입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바람.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605호 계약자 → '1011605홍길동' / 103동 602호 계약자 → '10306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별로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협약조건에 의거 분양대금의 10%(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대출취급기관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가 아닌 그 외 지역의 대출취급기관(본점 및 지점 등)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거리에 위치할 수 있어 중도금 대출(권리의무승계 계약서상 양도인 및 양수인의 대출취급기관 방문 관련 등)과 관련하여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해당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시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중단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입주지정 개시월 이자납입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함.
- 분양사무소(견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간 적용됩니다.
- 분양권 전매 거래 시에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는 전매자 상호 간에 합의 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입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 관계 (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①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당첨자는 당사 홍보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④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안내

■ 선택품목계약은 입주자의 선택 사항으로 추가 선택 품목의 금액 및 물품 등 관련 세부 사항은 사업주체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 옵션 계약은 추후 정해진 일정에 별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추가 옵션 계약 일정은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이오니 타입별, 품목별 가격이 상이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람.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은 기본으로 무상 제공으로 시공됩니다.**

■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품목	설치위치		옵션형	금액	계약금(20%) 계약시	잔금(80%) 입주지정일	비고
59A	현관중문	현관		3연동슬라이딩도어	880,000	176,000	704,000	
	디자인월	거실/복도벽체		디자인월	1,870,000	374,000	1,496,000	
	조명특화	현관/복도/거실/침실1,2/안방	현관	라인매입등	2,860,000	572,000	2,288,000	
			복도	멀티5구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2인치다운라이트조명				
			침실1,2	서한특허조명				
			안방	서한특허조명				
	주방특화	StyleUp	주방상판	세라믹타일+상판매립콘센트	12,210,000	2,442,000	9,768,000	
			주방벽체	세라믹타일				
			주방가구	상부PET플랩장				
			주방하부장	로봇청소기장				
			렌지후드	고급독립형후드				
			쿡탑	3구인덕션				
			개수대및수전	고급화				
			주방특화조명	라인매립등,옵션다운라이트				
	욕실특화	외욕실	벽체	포세린타일(1200*600)	5,280,000	1,056,000	4,224,000	
			바닥	포세린타일(300*300)				
			욕실수전및도기류	고급형				
		내욕실	벽체	포세린타일(600*1200)				
			바닥	포세린타일(300*300)				
			욕실수전및도기류	고급형				
			샤워부스	고급형				
	환기가전	외욕실,내욕실		복합환풍기	1,210,000	242,000	968,000	
	붙박이장	침실1		붙박이장(선택1)	880,000	176,000	704,000	
		침실2		붙박이장(선택2)	990,000	198,000	792,000	
		침실1+침실2		붙박이장(선택3)	1,650,000	330,000	1,320,000	
	드레스룸특화	안방		벽판넬조명형드레스룸 멀티5구	3,080,000	616,000	2,464,000	
	천장형시스템 에어컨	삼성		거실+안방(선택1)	3,410,000	682,000	2,728,000	
				거실+안방+침실1(선택2)	4,620,000	924,000	3,696,000	
				거실+안방+침실1,2(선택3)	5,830,000	1,166,000	4,664,000	
		LG		거실+안방(선택1)	2,860,000	572,000	2,288,000	
				거실+안방+침실1(선택2)	3,960,000	792,000	3,168,000	
				거실+안방+침실1,2(선택3)	5,170,000	1,034,000	4,136,000	
84A	현관중문	현관		3연동슬라이딩도어	880,000	176,000	704,000	
	디자인월	거실/복도벽체		디자인월	2,420,000	484,000	1,936,000	
	조명특화	현관/복도/거실/침실1,2/안방	현관	라인매입등	3,190,000	638,000	2,552,000	
			복도	멀티5구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2인치다운라이트조명				
			침실1,2	서한특허조명				알파룸제외
			안방	서한특허조명				
	주방특화	①StyleUp	주방상판	세라믹타일+상판매립콘센트	13,200,000	2,640,000	10,560,000	
			주방벽체	세라믹타일				
			주방가구	상부PET플랩장				

			주방하부장	로봇청소기장				
			렌지후드	고급독립형후드				
			쿡탑	3구인덕션				
			개수대및수전	고급화				
			주방특화조명	라인매립등,옵션다운라이트				
		②주방변경특화 -수납강화형	주방상판	세라믹타일+상판매립콘센트	17,930,000	3,586,000	14,344,000	
			주방벽체	세라믹타일				
			주방	일자형주방+주방팬트리+현관대형팬트리+키큰장+유리장식장				
			주방가구	상부PET플랩장				
			주방하부장	로봇청소기장				
			렌지후드	고급독립형후드				
			쿡탑	3구인덕션				
			개수대및수전	고급화				
			주방특화조명	라인매립등 +식탁및아일랜드옵션다운라이트				
	욕실특화	외욕실	벽체	포세린타일(1200*600)	5,280,000	1,056,000	4,224,000	
			바닥	포세린타일(300*300)				
			욕실수전및도기류	고급형				
		내욕실	벽체	포세린타일(600*1200)				
			바닥	포세린타일(300*300)				
			욕실수전및도기류	고급형				
			샤워부스	고급형				
	환기가전	외욕실,내욕실		복합환풍기	1,210,000	242,000	968,000	
	붙박이장	침실1+침실2		붙박이장(선택1)	2,090,000	418,000	1,672,000	별도선택불가
	드레스룸특화	안방		벽판넬조명형드레스룸 멀티5구	3,960,000	792,000	3,168,000	
	천장형시스템 에어컨	삼성		거실+안방(선택1)	3,630,000	726,000	2,904,000	알파룸제외
				거실+안방+침실1(선택2)	4,950,000	990,000	3,960,000	
				거실+안방+침실1,2(선택3)	6,490,000	1,298,000	5,192,000	
				거실+안방+침실1,2,+주방(선택4)	7,920,000	1,584,000	6,336,000	
		LG		거실+안방(선택1)	2,970,000	594,000	2,376,000	알파룸제외
				거실+안방+침실1(선택2)	4,070,000	814,000	3,256,000	
				거실+안방+침실1,2(선택3)	5,500,000	1,100,000	4,400,000	
				거실+안방+침실1,2,+주방(선택4)	6,600,000	1,320,000	5,280,000	
84B	현관중문	현관		3연동슬라이딩도어	880,000	176,000	704,000	
	디자인월	거실/복도벽체		디자인월	2,420,000	484,000	1,936,000	
	조명특화	현관/복도/거실/침실1,2/안방	현관	라인매입등	3,300,000	660,000	2,640,000	
			복도	멀티5구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2인치다운라이트조명				
			침실1,2	서한특허조명				
			안방	서한특허조명				
	주방특화	①StyleUp	주방상판	세라믹타일+상판매립콘센트	12,210,000	2,442,000	9,768,000	
			주방벽체	세라믹타일				
			주방가구	상부PET플랩장				
			주방하부장	로봇청소기장				
			렌지후드	고급독립형후드				
			쿡탑	3구인덕션				

			개수대및수전	고급화				
			주방특화조명	라인매립등,옵션다운라이트				
		②주방변경특화 -홈바형	주방상판	세라믹타일+상판매립콘센트	14,300,000	2,860,000	11,440,000	
			주방벽체	세라믹타일				
			주방	아일랜드장+홈바+키큰장				
			주방가구	상부PET플랩장				
			주방하부장	로봇청소기장				
			렌지후드	고급독립형후드				
			쿡탑	3구인덕션				
			개수대및수전	고급화				
			주방특화조명	라인매립등 +식탁및아일랜드옵션다운라이트				
	욕실특화	외욕실	벽체	포세린타일(1200*600)	5,280,000	1,056,000	4,224,000	
			바닥	포세린타일(300*300)				
			욕실수전및도기류	고급형				
		내욕실	벽체	포세린타일(600*1200)				
			바닥	포세린타일(300*300)				
			욕실수전및도기류	고급형				
			샤워부스	고급형				
	환기가전	외욕실,내욕실		복합환풍기	1,210,000	242,000	968,000	
	붙박이장	침실1+침실2		붙박이장(선택1)	2,090,000	418,000	1,672,000	별도선택불가
	드레스룸특화	안방		벽판넬조명형드레스룸 멀티5구	2,970,000	594,000	2,376,000	
	천장형시스템 에어컨	삼성		거실+안방(선택1)	3,740,000	748,000	2,992,000	
				거실+안방+침실1(선택2)	5,060,000	1,012,000	4,048,000	
				거실+안방+침실1,2(선택3)	6,600,000	1,320,000	5,280,000	
				거실+안방+침실1,2,+주방(선택4)	8,030,000	1,606,000	6,424,000	
	천장형시스템 에어컨	LG		거실+안방(선택1)	2,970,000	594,000	2,376,000	
				거실+안방+침실1(선택2)	4,070,000	814,000	3,256,000	
				거실+안방+침실1,2(선택3)	5,500,000	1,100,000	4,400,000	
				거실+안방+침실1,2,+주방(선택4)	6,600,000	1,320,000	5,280,000	
84C	현관중문	현관		3연동슬라이딩도어	880,000	176,000	704,000	
	디자인월	거실/복도벽체		디자인월	2,040,000	408,000	1,632,000	
	조명특화	현관/복도/거실/침실1,2/ 안방	현관	라인매입등	3,190,000	638,000	2,552,000	
			복도	멀티5구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2인치다운라이트조명				
			침실1,2	서한특허조명				
			안방	서한특허조명				
	주방특화	①StyleUp	주방상판	세라믹타일+상판매립콘센트	15,070,000	3,014,000	12,056,000	
			주방벽체	세라믹타일				
			주방가구	상부PET플랩장				
			주방하부장	로봇청소기장				
			렌지후드	고급독립형후드				
			쿡탑	3구인덕션				
			개수대및수전	고급화				
			주방특화조명	라인매립등,옵션다운라이트				
		②주방변경특화	주방상판	세라믹타일+상판매립콘센트	20,900,000	4,180,000	16,720,000	

		-수납강화형	주방벽체	세라믹타일				
			주방	ㄷ자형주방+3단서랍장 +복도팬트리+현관팬트리				
			주방가구	상부PET플랩장				
			주방하부장	로봇청소기장				
			렌지후드	고급독립형후드				
			쿡탑	3구인덕션				
			개수대및수전	고급화				
			주방특화조명	라인매립등 +식탁및아일랜드옵션다운라이트				
	욕실특화	외욕실	벽체	포세린타일(1200*600)	5,280,000	1,056,000	4,224,000	
			바닥	포세린타일(300*300)				
			욕실수전및도기류	고급형				
		내욕실	벽체	포세린타일(600*1200)				
			바닥	포세린타일(300*300)				
			욕실수전및도기류	고급형				
			샤워부스	고급형				
	환기가전	외욕실,내욕실		복합환풍기	1,210,000	242,000	968,000	
	붙박이장	침실1+침실2		붙박이장(선택1)	1,980,000	396,000	1,584,000	별도선택불가
	드레스룸특화	안방		벽판넬조명형드레스룸 멀티5구	3,960,000	792,000	3,168,000	
	천장형시스템 에어컨	삼성		거실+안방(선택1)	3,630,000	726,000	2,904,000	
				거실+안방+침실1(선택2)	4,950,000	990,000	3,960,000	
				거실+안방+침실1,2(선택3)	6,490,000	1,298,000	5,192,000	
				거실+안방+침실1,2,+주방(선택4)	7,920,000	1,584,000	6,336,000	
		LG		거실+안방(선택1)	2,970,000	594,000	2,376,000	
				거실+안방+침실1(선택2)	4,070,000	814,000	3,256,000	
				거실+안방+침실1,2(선택3)	5,500,000	1,100,000	4,400,000	
				거실+안방+침실1,2,+주방(선택4)	6,600,000	1,320,000	5,280,000	
101A	현관중문	현관		3연동슬라이딩도어	880,000	176,000	704,000	
	디자인월	거실/복도벽체		디자인월	2,750,000	550,000	2,200,000	
	조명특화	현관/복도/거실/침실1,2/ 안방	현관	라인매입등	3,520,000	704,000	2,816,000	
			복도	멀티5구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2인치다운라이트조명				
			침실1,2	서한특허조명				
			안방	서한특허조명				
	주방특화	①StyleUp ②-1.주방변경특화 -보조주방+장식장형	주방상판	세라믹타일+상판매립콘센트	15,070,000	3,014,000	12,056,000	
			주방벽체	세라믹타일				
			주방가구	마감재고급화(상부PET플랩장				
				+아일랜드장우드엠보PET)				
			주방하부장	로봇청소기장				
			렌지후드	고급독립형후드				
			쿡탑	3구인덕션				
			개수대및수전	고급화				
			주방특화조명	라인매립등,옵션다운라이트				
			주방상판	세라믹타일+상판매립콘센트	23,760,000	4,752,000	19,008,000	
			주방벽체	세라믹타일				

			주방	일자형주방+홈바+키큰장+보조주방+장식장+주방팬트리+복도팬트리				
			주방가구	마감재고급화(상부PET플랩장				
				+아일랜드장우드엠보PET)				
			주방하부장	로봇청소기장				
			렌지후드	고급독립형후드				
			쿡탑	3구인덕션				
			개수대및수전	고급화				
			주방특화조명	라인매립등 +식탁및아일랜드옵션다운라이트				
		②-2.주방변경특화 -보조주방+냉장고장형	주방상판	세라믹타일+상판매립콘센트	22,000,000	4,400,000	17,600,000	
			주방벽체	세라믹타일				
			주방	일자형주방+홈바+키큰장+보조주방+냉장고장(+키큰장)+주방팬트리+복도팬트리				
			주방가구	마감재고급화(상부PET플랩장 +아일랜드장우드엠보PET				
			주방하부장	로봇청소기장				
			렌지후드	고급독립형후드				
			쿡탑	3구인덕션				
			개수대및수전	고급화				
			주방특화조명	주방라인매입등				
				+식탁및아일랜드다운라이트				
	욕실특화	외욕실	벽체	포세린타일(1200*600)	5,390,000	1,078,000	4,312,000	
			바닥	포세린타일(300*300)				
			욕실수전및도기류	고급형				
		내욕실	벽체	포세린타일(600*1200)				
			바닥	포세린타일(300*300)				
			욕실수전및도기류	고급형				
			샤워부스	고급형				
	환기가전	외욕실,내욕실		복합환풍기	1,320,000	264,000	1,056,000	
	붙박이장	침실1+침실2		붙박이장(선택1)	1,980,000	396,000	1,584,000	별도선택불가
	드레스룸특화	안방		벽판넬조명형드레스룸 멀티5구	3,960,000	792,000	3,168,000	
	천장형시스템 에어컨	삼성		거실+안방(선택1)	3,630,000	726,000	2,904,000	
				거실+안방+침실1(선택2)	4,950,000	990,000	3,960,000	
				거실+안방+침실1,2(선택3)	6,600,000	1,320,000	5,280,000	
				거실+안방+침실1,2,+주방(선택4)	8,030,000	1,606,000	6,424,000	
				거실+안방+침실1,2,+알파룸(선택5)	8,030,000	1,606,000	6,424,000	주방변경특화시선택불가
				거실+안방+침실1,2,+알파룸+주방(선택6)	9,130,000	1,826,000	7,304,000	주방변경특화시선택불가
		LG		거실+안방(선택1)	2,970,000	594,000	2,376,000	
				거실+안방+침실1(선택2)	4,070,000	814,000	3,256,000	
				거실+안방+침실1,2(선택3)	5,500,000	1,100,000	4,400,000	
				거실+안방+침실1,2,+주방(선택4)	6,600,000	1,320,000	5,280,000	
				거실+안방+침실1,2,+알파룸(선택5)	6,600,000	1,320,000	5,280,000	주방변경특화시선택불가
				거실+안방+침실1,2,+알파룸+주방(선택6)	7,700,000	1,540,000	6,160,000	주방변경특화시선택불가
101T	현관중문	현관		3연동슬라이딩도어	880,000	176,000	704,000	
	디자인월	거실/복도벽체		디자인월	2,530,000	506,000	2,024,000	
	조명특화	현관/복도/거실/침실1,2/ 안방	현관	라인매입등	3,520,000	704,000	2,816,000	
			복도	멀티5구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2인치다운라이트조명				
			침실1,2	서한특허조명				
			안방	서한특허조명				
	주방특화	①StyleUp	주방상판	세라믹타일+상판매립콘센트	11,440,000	2,288,000	9,152,000	
			주방벽체	세라믹타일				
			주방가구	상부PET플랩장				
			주방하부장	로봇청소기장				
			렌지후드	고급독립형후드				
			쿡탑	3구인덕션				
			개수대및수전	고급화				
			주방특화조명	라인매립등,옵션다운라이트				
		②.주방변경특화 -다이닝형	주방상판	세라믹타일+상판매립콘센트	12,760,000	2,552,000	10,208,000	
			주방벽체	세라믹타일				
			주방	ㄱ자형주방+아일랜드장				
			주방가구	마감재고급화(상부PET플랩장 +다이닝하부장우드엠보PET)				
			주방하부장	로봇청소기장				
			렌지후드	고급독립형후드				
			쿡탑	3구인덕션				
			개수대및수전	고급화				
			주방특화조명	라인매립등 +식탁및아일랜드옵션다운라이트				
	욕실특화	외욕실	벽체	포세린타일(1200*600)	5,390,000	1,078,000	4,312,000	
			바닥	포세린타일(300*300)				
			욕실수전및도기류	고급형				
		내욕실	벽체	포세린타일(600*1200)				
			바닥	포세린타일(300*300)				
			욕실수전및도기류	고급형				
			샤워부스	고급형				
	환기가전	외욕실,내욕실		복합환풍기	1,320,000	264,000	1,056,000	
	붙박이장	침실1		붙박이장(선택1)	1,100,000	220,000	880,000	
		침실2		붙박이장(선택2)	1,210,000	242,000	968,000	
		침실1+침실2		붙박이장(선택3)	1,980,000	396,000	1,584,000	
	드레스룸특화	안방		벽판넬조명형드레스룸 멀티5구	7,810,000	1,562,000	6,248,000	
	천장형시스템 에어컨	삼성		거실+안방(선택1)	3,630,000	726,000	2,904,000	
				거실+안방+침실1(선택2)	4,950,000	990,000	3,960,000	
				거실+안방+침실1,2(선택3)	6,600,000	1,320,000	5,280,000	
				거실+안방+침실1,2,+주방(선택4)	8,030,000	1,606,000	6,424,000	
		LG		거실+안방(선택1)	2,970,000	594,000	2,376,000	
				거실+안방+침실1(선택2)	4,070,000	814,000	3,256,000	
				거실+안방+침실1,2(선택3)	5,500,000	1,100,000	4,400,000	
				거실+안방+침실1,2,+주방(선택4)	6,710,000	1,342,000	5,368,000	

■ 추가 선택 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 품목	하나은행	509-910025-85504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함으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605호 계약자 → '1011605홍길동' / 103동 602호 계약자 → '1030602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에서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사유로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 위치, 종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 시, 신발장 측면에 경량벽체가 시공되며 디딤판의 위치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월 옵션 미선택 시, 패널 시공 부위에는 기본 벽지 및 걸레받이가 시공됩니다.
- 디자인월 옵션 선택 시, 부착면의 평활도 및 패널 두께에 의해 실내 안목치수, 면적 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디자인월 벽 패널 나누기 및 색상, 패턴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코너부위에 몰딩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월 옵션 선택 시, 타 유상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디자인월 시공범위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특화 옵션은 타입별로 시공 범위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특화 옵션 미선택 시, 거실 우물천정은 간접조명 설치 공간이 별도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주방상판 및 벽체는 세라믹타일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으로 시공되는 상판 인조대리석(MMA)과 벽체 타일 샘플은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방특화 세라믹타일, 욕실특화 포세린타일 등 대형타일은 타일 자재 특성상 색상 및 패턴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랜덤으로 패턴이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옵션에 따라 변경되는 상부장, 아일랜드장 등 가구 형태, 조명기구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분양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타입별, 옵션별로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 옵션 선택 시, 로봇청소기장이 설치(로봇청소기 본체 미포함)되며 하부 수납공간이 줄어듭니다.
- 주방특화 옵션 선택에 따른 로봇청소기장 적용 시 급수 공급을 위한 공배관(주방 개수대 하부장에서 로봇청소기장까지)과 배수를 위한 배관이 시공사분으로 시공되며, 실제 급수 공급용 배관인 6mm 배관과 배수배관으로의 연결은 추후 입주자의 시공분으로 되어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봇청소기의 설치상 부주의 또는 사용상의 부주의에 따른 급수배관 단락에 의한 누수나 배수배관 연결 미흡, 이물질 막힘 등의 하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특화 옵션 선택 시, 벽, 상판에는 세라믹타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타일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옵션 미선택 시, 상판에는 인조대리석(MMA)이 설치되며 재료 특성상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4A, 101A 타입의 주방특화 옵션 선택 시, 알파룸은 미설치 됩니다.
- 101A 타입의 주방특화-주방변경특화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포켓형 슬라이딩도어 상부에는 유지관리, 점검 등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101A 타입의 주방특화-주방변경특화 옵션 선택 시 보조주방의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MMA), 벽체는 타일로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욕실 벽,바닥 타일은 포세린타일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으로 시공되는 타일 샘플은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욕실특화 옵션 선택 시, 욕실 벽타일은 에폭시 본드 붙임으로 시공되며, 벽체 두드림 시 내부가 비어있는 듯한 소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와 무관합니다.
- 환기가전(복합환풍기) 옵션 선택 시, 기본 설치되는 일반 욕실휀은 미설치되며, 미설치된 위치에는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복합환풍기는 사용 용도에 맞춰 세면대 천정 부근에 설치됩니다.

- 84A, 84B, 84C, 101A 타입의 붙박이장 옵션은 침실별 선택이 불가하며, 일괄 선택되오니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에 따라 변경되는 가구 형태, 조명기구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분양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타입별로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에 추가적으로 스탠드형 또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 및 전원용 콘센트가 시공되며 위치는 각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84A타입 알파룸은 설치제외구역이며, 101A타입의 경우 주방변경특화 옵션 선택 시 알파룸이 보조주방으로 변경되어 알파룸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84A의 알파룸 및 주방변경특화 수납강화형 선택에 따른 펜트리의 바닥난방은 침실2와 연동하여 구동되며, 침실2와 별개로 바닥난방을 동작할 수 없습니다.
- 101A의 알파룸의 바닥난방은 별도 온도조절기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방변경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으며, 거실과 연동되어 난방됩니다. 연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방가구 하부장 내에 위치한 난방분배기 구획도를 참조하여 차단하고자하는 구역의 밸브를 수동으로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11 입주 및 기타 유의사항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추후 통보)
- 사전방문 확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확인

■ 입주예정일 : **2029년 11**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입주예정월은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기로 함
- 본 사업장은 500세대 이상 단지로서 입주지정기간은 최소 60일 이상 제공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도 발생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함.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경비실 등 (단,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 시설물임.)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2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청약자 및 계약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구분	주요내용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주택전시관의 게시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및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고(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 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주택전시관으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 · 전기실 · 발전기실 등의 급 · 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매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 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출차주의 경보음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경관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인·허가를 진행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색채 및 문양, 마감디자인은 외관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의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색채 심의 및 지자체 자문 등으로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환경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혐오시설 유무, 도로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변 환경과 변경사항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 당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등에 표현된 CG, 모형, 카탈로그 및 기타자료에 표현된 주변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근린공원, 유수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현장여건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화정1지구 도시개발구역)는 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설치 일정이 변경,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조성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구 내에는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 유수지, 근린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각 용지의 개발 및 건축물 신축, 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라 공사 소음, 진동, 분진 및 교통량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주거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등에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건축물의 위치, 규모, 높이 등에 따라 일조, 조망, 통풍 및 사생활 등이 제한되거나 주거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염포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산지의 지형에 따라 조망, 통풍 등 주거환경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지 인접 특성상 계절 및 기상 여건에 따라 습도, 벌레 및 야생동물 출현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염포산톨게이트 및 염포산터널과 인접해 있으며, 차량 통행량 및 교통 여건에 따라 차량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근 도로의 교통 혼잡 등으로 주거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변 도로 시설의 노면표시, 교통신호체계 및 교통안전시설, 가로수, 가로등 등 설치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교통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구 앞 도로에는 육교는 설치되지 않으며, 보행 및 통행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주변 도로와 보행 동선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보호자 선택에 따라 「유보통합포털」시스템을 통해 지원 및 입학이 이루어지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미포초, 동구학교군, 동부학교군에 배치 예정입니다. 단** 중·고등학생 배정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군(학구) 및 추첨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통행,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설계관련 주요사항	1. 일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착공 이후 현장여건, 관계 법령, 인허가 조건 및 심의·협의 결과, 상품개선, 품질향상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계약자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등에 표현된 CG 이미지(컴퓨터그래픽), 모형,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사항이 간략하게 표현되거나 실제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등에 표현된 구성, 명칭, 집기류, 내부 구조 등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기본 마감만 제공되며 마감재, 제공품목 및 내부 실별 용도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명칭, 동 표시, CI·BI 위치, 건축물의 외부 색채 및 형태(줄눈, 몰딩, 옥상 및 옥탑구조물 등), 경관조명, 문주, 동출입구 및 저층부 디자인, 경사로, 창호, 난간대, 조경계획(식재계획, 포장계획 및 패턴, 놀이터, 수경시설 등), 각종 시설물(DA, Top Light, 쓰레기집적소, 자전거보관소 등)의 디자인 및 형태, 마감사양 등은 현장여건, 상품개선, 인허가 심의(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문주, 각종 시설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설치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 세대는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빛반사등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모형 및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내부가 협소하여 이삿짐 운반에 엘리베이터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샤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되었고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며 대지지분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단지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주민카페,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경로당, 어린이집,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선큰, D/A(설비 환기구), Top Light(지하주차장 천창), 쓰레기집적소, 자전거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 각종 시설의 위치 및 배치에 따라 인근 동 및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모형 및 단지 현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 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단지 및 세대 도면이 비치되어 있사오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이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사이즈, 기둥 및 주변상황) 및 자재수급 등에 의해 분양시 공고된 자료와 일부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보관함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의 총 에너지 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의 값은 계산 결과 값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가 지상 혹은 지하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와 인접한 동은 차량통행 및 출차표시등에 의한 소음과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산불진화용 상수도 소화전이 설치되어 산불발생시 사용가능하며 상수도 사용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단지배치	•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설계도서 비치) 단지 내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단지 진출입로 상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대지경계선 내측으로 침범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 및 입주민의 통행을 위한 것으로써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 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 동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세대는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등) 설치로 인해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상부로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의 환기구 및 제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및 제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 설비, 경관조명 설비, 태양광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 일부는 가로등(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 환기창의 설치유무 및 위치는 호 · 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및 필로티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모형, 조감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5동~106동 사이 인근에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어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 Top Light(지하주차장 천창) 등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의 개발 및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해 일조, 조망 등 주거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배치 및 구조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이 제한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출입구, 옥외, 어린이 놀이터, 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CCTV의 배치 및 수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단지 내부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면한 인접 도로 등의 레벨 조정으로 인해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경사면, 계단, 램프, 옹벽 등의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길이),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이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단지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차량동선 등),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 시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

		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상의 비상차로 동선 및 보도의 폭은 추후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 변경,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 배치,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대지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 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A(설비 환기탑), 쓰레기 분리수거장, 지하주차장 천창 등의 위치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바라며, 이로 인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보관소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한전지중 인입점으로부터 전기실까지 전력공급을 위한 특고압선로가 구성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한국전력공사의 지중공급 지역으로 전기 공급을 위한 P/S(Pad Switch)판넬이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동의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과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공동주택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 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허용오차 내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단지 내에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공공보행통로는 일반인(외부인)의 보행 통행을 위해 상시 개방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통행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저층부 옥상 태양광패널에 의한 빛 반사로 고층부세대의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아파트 주동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주민카페,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경로당, 어린이집,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선큰, D/A(설비 환기구), Top Light(지하주차장 천창), 쓰레기집적소, 자전거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이 설치되며, 단지 내 각종 시설의 위치 및 배치에 따라 인근 동 및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대수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 또는 기계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 및 위치, 설치유무, 개폐유무는 동 형태 및 층별, 라인별 다를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색채, 형태(외벽 및 측벽 줄눈, 몰딩, 동출입구 및 저층부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마감재, 창호 및 난간대 형태, 색상, 야간경관 등과 같은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 및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관련법령의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뿜칠 등으로 마감되며, 주동 형태에 따라 동별 석재 설치 구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규모, 형태,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집적소는 각 동 전후 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및 미관상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공 시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의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들에 의해 인근 동 및 세대는 소음, 빛공해, 냄새 등으로 피해가 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중앙광장, 수경시설, 선큰 등이 위치하여, 인근 동 및 세대에서는 소음 발생 및 세대 내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에서는 이로 인한 환경권,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 냉난방기 실외기는 옥상 또는 외부로 향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동에서는 미관 및 조망, 소음, 진동, 열풍에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의 환기구 및 제연용 급기구가 설치됩니다. • 각 동의 지하층에는 세대창고가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동별 위치, 수량 및 개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동별 우편물수취함, 무인택배시스템 위치, 수량 및 개소는 상이하며, 향후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으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 및 유지보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지하 PIT층에는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 및 옥탑층 바닥은 무근콘크리트로 마감되며, 실시공시 바닥 줄눈 등 디테일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일부 세대 측벽에는 측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측뢰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로써 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01~107동 옥상층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하부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위치 및 구성,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며, 이에 따른 전자파 위해성 관련 민원 등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옥외 안테나 설치위치 : 101동, 103동, 104동 옥상층 - 중계장치 설치위치 : 101동, 103동, 104동 옥상층 및 지하 2층 휀룸실 - 공청 및 위성안테나 설치위치 : 106동 옥상층 • 단지주출입구 및 드롭존, 맘스테이션, 차량출입램프,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101동, 107동 세대에서는 차량소음 및 진동, 자동차 전조등, 출차표시 등에 따른 빛 공해, 소음 등 사생활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부출입구(진입, 진출), 차량출입램프,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102동, 108동 세대에서는 차량소음 및 진동, 자동차 전조등, 출차표시 등에 따른 빛 공해, 소음 등 사생활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에는 문주가 설치되며, 인접한 101동, 107동 저층 세대에서는 문주 설치로 인한 세대 조망 간섭,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전면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저층세대에서는 조망권, 영업(간판, 주방배기, 냉난방기 실외기 등)에 따른 환경권, 소음, 진동, 분진, 냄새 등 사생활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1동 인근 지하층에는 펌프류, 저수조, 소화수조 등 설비시설이 설치되며, 인근 동 및 저층세대에서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전면에는 주민공동시설-1(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등)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세대에서는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등 사생활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3동, 104동 배면에는 전기차주차장(옥외)이 설치되며, 인접한 동 및 저층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진동, 빛 공해 등이 발생하여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4동 전면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세대에서는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등 사생활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5동 지하1층에는 경로당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세대에서는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등 사생활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5동, 106동 사이 지하층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등 설비시설이 설치되며, 인근 동 및 저층세대에서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 전면 지하1층에는 주민공동시설-2(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등)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세대에서는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등 사생활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7동 지하1층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지상24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에서는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등 사생활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7동 스카이라운지 전용E/V에 근접한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8동 하부에는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및 차량 전조등 불빛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104동, 105동, 107동 세대는 외부인의 통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단위세대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창호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유리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하드웨어 등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의 전시품, 유상옵션품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품목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공 시 세대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바닥/거실 아트월/주방 벽/욕실 벽 및 바닥/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경량벽체에는 액자, 선반 등 하중을 견디는 고정 가구 및 기계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일부 비내력 벽체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벽체 또는 조적벽체, 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 시 단위세대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바닥 또는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욕실샤워 등 다량의 온수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에는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최상층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태양광의 위치 및 구성,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천정은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일부 발코니에 대하여서는 각종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실외기실 내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발코니 단차의 형태, 위치 및 레벨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현장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텐박스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주방 및 욕실의 배기는 직배기 방식(당해층 배기방식)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외벽에 직배기용 후드캡이 외벽에 설치되어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침실 내부 벽체에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및 크기,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벽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상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월패드 등 전기/통신 시설물의 위치 및 높이, 재질 등이 본공사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급수/가스계량기/전기계량기의 검침방식은 원격검침방식이며, 세대 월패드에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소방/설비배관이 매립되어 못박음 등으로 인하여 단락/단선/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천정 및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이 설치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세대에는 대피공간이 없고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각 층별,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1층 세대 또는 최하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는 상부 세대(피난용 완강기 설치됨)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화재 또는 비상 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하여 피난층으로의 탈출이 진행되므로 화재 또는 비상발생 아래층(최하층 포함)의 경우 세대내로 탈출이 진행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향식 피난구 상부에는 적치물의 보관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은 국가공인표준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재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추후 실제 세대의 성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개별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파손 및 훼손사항(인접한 마감 훼손, 설비 오작동 포함)은 하자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설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세대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할 경우 불법제품(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한 제품 또는 불법제품)의 설치를 금하며, 불법제품 설치로 인한 공공하수도 막힘, 악취 등 문제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에어컨 냉매 배관은 안방과 거실에만 일괄 설치되어 위치별로 선택 할 수 없으며(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다르니 주택전시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위치에 에어컨 설치시 별도의 냉매 배관 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입주자가 직접 공사하여야 합니다. (단, 천장형에어컨을 옵션으로 선택한 세대는 기본제공되는 안방/거실 냉매 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음) • 실외기실 루버창에는 에어컨 실외기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루버창이 개폐되는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101T형은 테라스 진입을 위해 테라스에 면한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테라스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본 공사시 난간대의 높이, 재질,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T형은 테라스 진출입 시 실내와 외부의 단차턱은 빗물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한 것으로 턱에 발이 걸리거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는 하자와 무관합니다. • 101T형 테라스는 본 공사시 품질 개선 등의 사유로 세부 마감재의 형태 및 크기,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8동 입면의 외장재 시공에 따라 일부 벽체의 마감 두께가 다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제 사용 가능한 101T형 테라스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01T형은 세대 간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본 공사시 세대간 경계벽의 높이,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T형 테라스에는 오·우수 드레인, 홈통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101T형은 세대별로 발코니 드레인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1T형 천장에는 상부 세대의 배관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01T형 테라스에는 별도의 수전이 설치되지 않고, 빗물 배출을 위한 배수구만 설치되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T형은 특성상 단위세대가 외부에서 일부 보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1T형은 1,2층에 계획되어 별도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101T형 배면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벽체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체의 높이 및 이격거리 등에 따라 배면 방향의 조망과 개방감이 제한되거나 채광 및 통풍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1T형 하부에는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1호 세대 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및 차량 전조등 불빛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뿐만 아니라 주변 세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1T형 테라스에서 발생하는 소음, 조명, 냄새, 배수, 시선 등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테라스 이용 시 다른 입주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101T형 테라스는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으로, 강우, 강설, 기온 변화 등 외부 환경에 따라 결로, 물고임, 오염 및 마감재의 변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T형 테라스에 별도의 시설물, 데크, 차양, 창호, 화단(조경시설) 등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구조, 방수, 배수, 안전 및 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 따른 허용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101T형 테라스를 특정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이 법적으로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101T형 테라스는 건축법상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테라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며, 테라스는 각층 해당세대가 독립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고 단순 점유하는 공간이므로 계약 전이에 대해 관련 도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T형 테라스는 해당세대 일부에 설치된 발코니 확장 외 테라스 공간의 경우 전용공간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으로 개인의 사적활용 및 구조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101T형 테라스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방수층을 손상시키는 등의 사유로 아래층 세대와 분쟁이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시설복구 및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부대시설	• 각종 홍보물 상의 주민공동시설(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주민카페,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경로당, 어린이집,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의 내부구조 등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 디자인, 세부시설의 종류 및 위치, 각 실의 크기, 내부 구조 및 실별 용도, 창호크기 및 위치, 마감재, 시설물의 수량 및 디자인 등이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를 통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시설물의 사용에 대해 그 어떠한 요청이나 중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공사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열풍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주변 여건에 따라 인근 세대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주택법」제35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될 계획입니다. • 단지 내에는「주택법」제35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나,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대해 반대할 경우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벽체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 및 벽체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내 동선, 주차구획, 위치의 변경, 성능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지하2~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진입 유효높이 및 지하2층 주차장 차로 유효높이는 2.7m, 지하주차장 부출입구 진입 유효높이 및 지하3층 주차장 차로 유효높이는 2.3m, 주차장 주차면의 주차구획의 유효높이는 2.1m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는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지하주차장 층고 최적화를 위해 층 내부에서 일부 구간은 천정고가 다를 수 있음.)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단지 동측에 주출입구 1개소, 남측에 부출입구(진입 1개소, 진출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출입구를 통해 진입하는 경우 지하 2층으로, 부출입구를 통해 진입하는 경우 지하 3층으로 연결되므로 차량 이용 시 출입구별 주차장 연결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지형차를 고려하여 지하주차장을 계획함에 따라 동별 주차장 연결층 및 주차 동선에 차이가 있으며, 105동, 106동, 107동은 지하3층 주차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동별 지하주차장 연결층 및 이동 동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접근 방법 및 주차대수 등은 각 동 라인별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입주자의 요구 등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계획주차대수는 총 1,129대(공동주택 1,123대, 근린생활시설 6대)로 계획(장애인주차, 전기차주차 계획 포함)하였으며, 차량동선에 의한 동별 주차 배분, 출입 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지하주차장 2층에 115기(급속 6기, 완속 51기, 과금형콘센트 58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 위치는 동별 균등하지 않으며 사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의 방침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세대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역은 인허가청 조건 및 협의결과에 따라 지하주차장 내 설치하고 해당 구역 상부 지붕슬래브가 오픈되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픈부를 통해 강우, 강설 및 외기가 유입될 수 있으며, 기상 여건에 따라 지하주차장 바닥에 물고임, 결빙, 습기 등이 발생하거나 주변 시설물 및 마감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 특성상 우천, 강설 시 유입수의 배수 및 제설, 제빙 관리가 필요하며, 동절기에는 외기에 노출된 배관 및 설비 등에 동결, 동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공간의 구조적 특성과 관리상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내에는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카페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이용자 편의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방통행(1WAY) 차량 동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카페의 운영 여부 및 운영 방식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입주 후 카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 주체 선정, 운영 방안 마련 등은 입주자 측에서 별도로 추진하여야 하오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 · 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외 부동산, 전문투자자, 블로그(당사가 홍보자료를 제공한 블로그 포함), 인터넷 게시글 등의 자료는 당사와 무관함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 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 견본주택은 공동주택 84A, 101A 타입으로 시공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PVC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건립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미건립 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마감자재목록표를 비치하오니,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수전류 등의 제품사양, 위치, 개수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단위세대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견본주택,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본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미포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단위세대 실별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 및 주택 전시관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주변의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는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함. •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13 기타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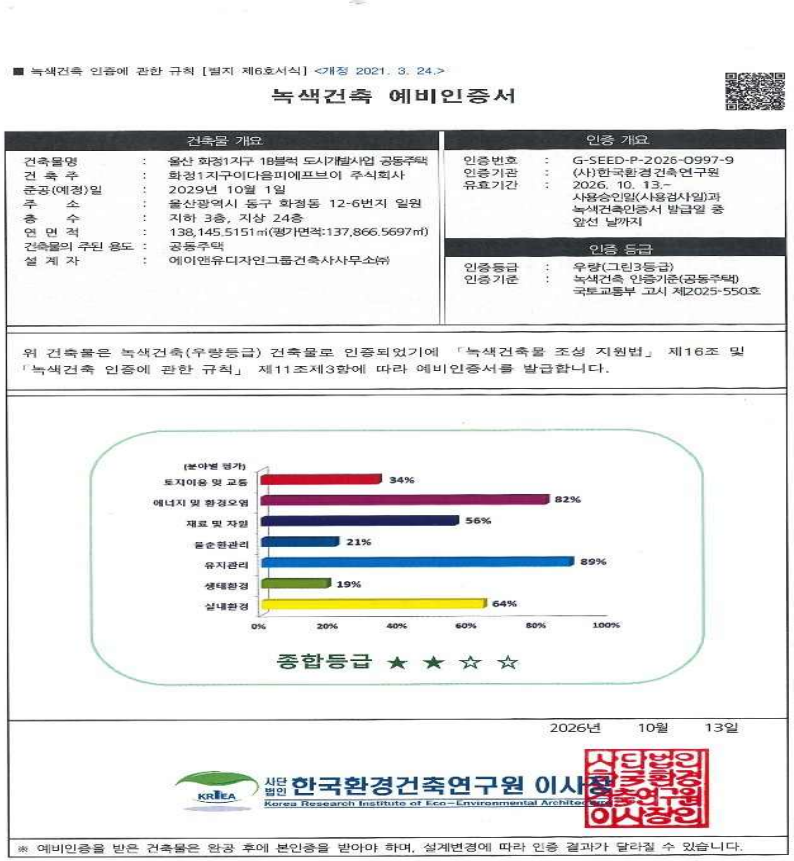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난방열 효율이 92% 이상인 보일러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급탕-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시) 인증서 표기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24.>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울산 화정1자구 1B블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인증번호	G-SEED-P-2026-0997-9
건 축 주	화정1자구이다음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인증기관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준공(예정)일	2029년 10월 1일	유효기간	2026. 10. 13.~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주 소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2-6번지 일원		
층 수	지하 3층, 지상 24층		
연 면 적	138,145.5151㎡(평가면적:137,866.5697㎡)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 계 자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5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량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26년 10월 13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울산 화정1자구 1B블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2. 신 청 자 : 화정1자구이다음피에프브이 주식회사
3.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2-6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토·성토량(땅깎기·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밀소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본 공동주택은 상기 인증을 득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인증사항은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내진 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내진 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내진등급(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으로 표기

구분	등급
내진능력산정기준	내진Ⅰ등급

■ **분양보증**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분양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3412026-101-0000500 호	310,603,58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주)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상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부흥이앤씨	㈜한국전설엔지니어링
감리금액	3,738,711,460	827,201,000	165,000,000	791,95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호	화정1지구이다음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서한	㈜서한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24, 한라타워맨션상가 2층 4호(전하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5
법인등록번호	230111-0043597 170111-0023002	170111-0023002

■ 견본주택

견본주택 위치	관련사항
	• 견본주택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2-6 • 전 화 : 052-296-0056 • 운영시간 : 평일, 주말 10:00 ~ 18:00 • 홈페이지 주소 : https://hwajeong-seohan.com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